

#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동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4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
발 의 자 : 이동현, 권영희, 김경우, 김광수,  
김제리, 오현정, 우형찬, 이병도,  
전병주, 최웅식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2019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으로 인권탐방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‘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계획’을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추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도시 정책을 확고히 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7조 2항 6호에 ‘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계획’을 신설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계획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7조(인권정책 기본계획) ① (생략)</p> <p>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6. (생략)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>제7조(인권정책 기본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인권현장 탐방 사업의 실행 계획</u></p> <p><u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u>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